

# kiri Weekly

2016.1.25. 제369호

## 이슈

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

## 포커스

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에 따른 고려사항

## 글로벌 이슈

대외적 환경변화가 미국 생명보험회사 전략에 미치는 영향  
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 논란과 시사점

## 금융시장 주요지표

**kiri** 보험연구원  
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

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,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  
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(여의도동 35-4) 8층 보험연구원 (문의 : 변철성 수석담당역 / 02-3775-9115)



#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

정원석 연구위원

## 요약

- 정부는 2014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.
  - 세제혜택 방식 전환은 연금저축에 대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유인 강화에 목적이 있음.
  - 소득공제방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연금납입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인 반면, 세액공제는 연금납입액의 일정부분을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방식이므로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의 세제혜택이 증가함.
-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세제혜택 변화가 연금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,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음.
  - 저축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이 감소했음에도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금액이 변화하지 않은 반면, 저축여력이 크지 않으면서 세제혜택이 줄어든 중·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과 납입금액 모두 감소함.
  -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세액공제를 통해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.
  - 이러한 결과는 세제혜택 방식 전환의 목표가 중·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 제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금저축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보여줌.
- 따라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이후 다음과 같은 보완적인 조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.
  - 2015년 연소득 5,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액이 15%로 증가하였으므로,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인 연금저축 가입유인 제공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음.
  -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할 수 있음.

## 1. 검토배경



■ 정부가 2014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(공제율 12%)로 전환하였음.

- 세제혜택 방식의 전환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<sup>1)</sup>(이하 “연금저축”)에 대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과 저소득층의 가입유인 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.

■ 이러한 세제혜택 방식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유인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.

- 세액공제율에 비해 낮은 한계세율<sup>2)</sup>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연금저축 가입유인이 증가할 것임.
- 반면에 한계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가입유인이 감소할 것임.

■ 기존연구에서도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의 효과가 계층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었음.<sup>3)</sup>

- 저축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한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이 증가했으나 그에 대한 반응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.
- 고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전환하더라도 연금저축 가입유인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.
- 중산층은 개인이 적용받는 한계세율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측함.

■ 본고에서는 2015년 국세통계연보<sup>4)</sup>를 이용해 세액공제 전환 이후 실제로 연금저축 행태가 어떻게 변

1)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은 은행, 보험, 증권업계에서 판매하며 신탁, 보험 그리고 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음.

2) 소득세 한계세율표.

과세표준	한계세율
1,200만 원 이하	6%
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	15%
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	24%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	35%
1억 5천만 원 초과	38%

3) 정원석·강성호(2015), 「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」, 『재정학연구』, 제8권 2호.

4)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는 2014년 귀속분(출간연도의 전년도 귀속분) 국세통계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.

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금세제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함.

- 국세통계연보 자료 중 소득형태가 비교적 동일하고 소득정보가 투명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정보를 이용하여 연금저축행태를 살펴보고자 함.
-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에는 GDP성장률, 가처분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세제혜택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.
  - 세제혜택이 개인의 연금저축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학술 논문을 통해 학계에서 받아들여 지고 있음.

## 2. 연금저축 가입현황 및 특징



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소득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<sup>5)</sup>한데 반해 연금저축 가입자<sup>6)</sup>와 연금저축 납입 총액은 2014년 감소하였음(〈표 1〉 참조).

- 소득공제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수는 2011년 1,554만 명에서 2014년 1,669만 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였음.
- 반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2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6만 명, 비율로는 2.5% 감소함.
-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납입액 역시 감소세로 돌아서 2014년에 전년 대비 3,482억, 비율로는 5.4% 감소하였음.

5) 근로소득자 수와 더불어 연도별 GDP성장률(<sup>13년</sup>2.9% → <sup>14년</sup>3.3%), 개인 가처분 소득(<sup>13년</sup>1,495만 원 → <sup>14년</sup>1,524만 원) 등의 경제환경은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부액 상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성장함.

6) 국세통계연보의 분류상 ‘연금저축 납입자’의 정확한 의미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연금저축을 납입한 자이나, 1년에 한 번이라도 납입한 사람은 연금저축 가입자로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‘연금저축 가입자’로 통칭함.

〈표 1〉 연도별 근로소득자 연금저축 가입자 수 및 납입총액

(단위: 만 명, 억 원)

구분	근로소득자			근로자 중 연금저축 가입자			근로자의 총 연금저축 납입액		
	인원 수	전년대비 증감	전년대비 증감률	인원 수	전년대비 증감	전년대비 증감률	총 납입액	전년대비 증감	전년대비 증감률
2011	1,554	-	-	218	-	-	54,224	-	-
2012	1,577	23	1.5%	237	19	9.0%	61,059	6,835	12%
2013	1,636	59	3.8%	241	4	1.3%	63,880	2,821	4.6%
2014	1,669	33	2.0%	235	-6	-2.5%	60,398	-3,482	-5.4%

자료: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.

#### ■ 연금저축 가입률 및 가입자의 평균납입액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본 결과, 저소득층에서 선형적 예측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(〈표 2〉 참조).

-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,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감소하였음.
  - 연소득 8,0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연금저축 가입률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.
  - 연소득 4,000~8,000만 원 소득계층은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이 2014년 소폭 감소함.
    - 6,000~8,000만 원의 소득을 갖는 근로자의 경우 2013년까지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 가입률은 2.5% 포인트 하락하였음.
    - 4,000~6,000만 원의 소득을 갖는 근로자의 경우,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3년 소폭(1.7% 포인트)하락한 이후 2014년 비교적 큰 폭(2.6% 포인트)으로 하락하였음.
- 특히, 연소득 2,000~4,000만 원 소득계층의 경우 가입률은 2013년 2.5% 포인트, 2014년 4.5% 포인트씩 2년 연속 감소하였음.

〈표 2〉 근로자 소득수준 및 연도별 연금저축 가입현황

(단위: 이상~미만, 만 원)

구분	~2,000		2,000~4,000		4,000~6,000		6,000~8,000		8,000~10,000	
	가입률	평균 납입액	가입률	평균 납입액	가입률	평균 납입액	가입률	평균 납입액	가입률	평균 납입액
2011	2.8%	158	25.0%	221	47.4%	270	60.8%	291	68.8%	315
2012	3.1%	164	24.5%	226	47.6%	278	61.9%	299	70.6%	321
2013	2.8%	181	22.0%	229	45.9%	279	61.1%	303	70.4%	324
2014	1.9%	102	17.5%	208	43.3%	275	58.6%	301	69.0%	320

자료: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.

### 3. 세액공제 도입 이후 연금저축행태에 대한 분석



-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 전환을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음.
  - 이는 소득계층별로 세제혜택 방식 전환으로 인한 가입유인의 변화와 함께, 저축여력에 따른 소비이연으로 인한 한계효용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임.
-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여력이 충분하므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이 존재함.
  -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세제혜택으로 얻는 수익률이 해당 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인 24% 이상에서 12%로 감소하였으나, 이 역시 여타 금융상품으로부터 얻기 어려운 높은 수준임.
  - 따라서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기존연구에서 예측한대로 큰 변화가 없음.
- 연소득 4,000~6,000만 원의 소득구간에 있는 중산층의 경우 저축여력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감소하여 연금저축 가입유인이 줄어들음.
  - 해당 소득수준에 있는 근로자는 저축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큼.
    -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저축으로 인해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(衣食住)관련 비용을 줄여야 할 정도로 현재 포기해야 하는 소비의 중요성이 클 수 있음.
  - 또한, 이들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인 공제항목 적용 시 한계세율이 15% 수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12%로 세액공제혜택이 줄어든 것이 연금저축 감소의 원인일 수 있음.
    -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5년부터는 총소득 5,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을 15%로 상향조정함.
- 연소득 2,000~4,000만 원 소득계층은 세액공제로 인해 세제상의 연금저축 가입유인은 증가하였으나 저축여력이 매우 적은 계층임.
  - 동 계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2014년에도 가입률 및 납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해당 소득계층

의 저축여력에 비해 세제상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음.

- 특히, 해당 소득계층에서도 한계세율 15%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소득 4,000만 원에 가까운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해 연금저축 납입 유인이 감소함.
  - 연소득 2,000~4,000만 원 소득계층에서 2,0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일 가능성이 높음.
  - 반면 4,0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한계세율 15%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같은 소득구간에 있지만 세제혜택에 대한 반응은 상이할 수 있음.

■ 연소득 2,000만 원 이하 계층의 경우 면세자의 비율이 높아 세제혜택으로 인한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유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- 동 소득계층은 노후에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,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함.

#### 4. 결론 및 제언



■ 정부는 중·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유인을 늘리려는 목적을 갖고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나 중·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늘어나지 않았음.

- 중산층의 경우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세제혜택 축소가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.
-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세제혜택 확대가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■ 세액공제 도입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및 납입금액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.

- 작년 연소득 5,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세액공제율이 15%로 상향조정 되었으므로, 향후 중산층의 연금저축 가입유인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.

- 또한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면세자로서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  -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납입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.
  - 이는 세제혜택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연금 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함.
- 마지막으로 본고의 주장은 세액공제 도입 이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.
  - 따라서 추후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한 후 세제혜택과 연금저축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및 탄력성 추정 등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. [kiri](#)